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2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3. 11. 22. ~ 11.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8조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강원인권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	---------	---------

별표 2 중 총계 “205”를 “2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00”을 “1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3”을 “191”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206”을 “204”로 하고, 일반직 계 “201”을 “19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4”를 “192”로 한다.

별표 6 중 “2024년 2월 29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한시정원) 인권교육원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	제18조(한시정원) ----- ----- ----- ----- 2026 년 2월 28일-----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05</u>	<u>203</u>	-2
·	·	·	
·	·	·	
일반직 계	<u>200</u>	<u>198</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93</u>	<u>191</u>	-2
·	·	·	
·	·	·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06</u>	<u>204</u>	-2
·	·	·	
·	·	·	
일반직 계	<u>201</u>	<u>199</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94</u>	<u>192</u>	-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5